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2. 7 선고 2020가단344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심 담당변호사 김우성

변 론 종 결 2021. 10. 26.

판 결 선 고 2021. 12. 7.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9. 11.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19. 11. 25. 접수 제125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6. 6.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16. 6. 24. 접수 제64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와 피고는 2004. 10. 6. 혼인신고를 마쳤고, 이후 C는 건설장비 대여업 등에 종사하였으며, 피고는 전업 주부로 생활하였다.

나. C는 혼인기간 중인 2007. 8. 31. 주식회사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7. 9. 7. 자신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러던 중 C는 2016. 6. 2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1/2지분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016. 6. 24.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6. 24. C에게 9,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그 원리금을 48개월에 걸쳐 분할상환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마. 그러던 중 C는 2019. 11. 8. 피고와 함께 협의이혼 신청을 하였고, 그 직후 E 주식회사가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의 나머지 1/2지분을 가압류하자 이를 말소시킨 뒤, 2019. 11. 22. 피고에게 위 지분을 대금 7,000만 원에 매도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2019. 11. 25. 피고 앞으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바. C는 그 직후인 2019. 12.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분할상환을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3. 10. C에게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을 해지하므로, 잔액 14,330,350원을 즉시 상환하기 바란다’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사. 그 후 C는 2020. 4. 13. 피고와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는데, 당시 미성년자녀 2명의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면서 그 양육비로 1인당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잔액은 2021. 8. 11. 기준 합계 17,912,327원이고, 그 밖에 C는 2020. 5. 31. 기준 총

75건, 합계 565,690,780원의 국세를 체납 중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0,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세청(삼척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증여 관련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기 직전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대출 당일에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제1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 당시 C가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은 피고 역시 다투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 원고가 피보전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로서 내세우는 이 사건 대출약정의 체결 시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 이후인바, 이 사건 증여를 일컬어 이 사건 대출금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대출금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금채무자인 C의 분할상환 지체가 시작된 시점이 이 사건 증여일로부터 42개월 이후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증여 당시 C에게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 하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매매 관련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서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의 1/2지분을 아내인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책임재산 부족 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는바, 이는 C의 채권자인 원고 등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를 구성하고,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협의이혼 당시 C와 사이에 재산분할, 양육비 및 위자료 등으로 7,000만 원 이상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 이를 이 사건 매매의 매매대금 7,000만 원과 상계하는 형식을 취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다투므로 보건대, 설령 이 사건 매매가 일정 부분 재산분할 등의 실질을 갖는다 하더라도, 다른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이미 이 사건 증여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1/2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는바, 그로써 부부간의 실질적인 재산분배는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나머지 1/2지분에 관해서까지 재산분할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매매가 이뤄진 결과, C에게는 집행 가능한 적극재산이 전혀 남지 않는 상태가 초래된 점, 반면 C와 피고의 혼인기간 중에 발생한 5억 원이 넘는 국세채무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재산분할도 이뤄지지 아니한 채 여전히 C의 단독채무로 남아 있는 점, 위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추단케 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양육비와 관련하여서도 C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정기금 지급약정이 체결되었던 점, 나아가 위자료채권이나 양육비채권의 경우 그 채권자와의 통모 하에 매매대금 상계 등의 형식을 빌려 그 채권에 대해서만 우선변제를 하는 것 또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의 나머지 1/2지분을 재산분할 등의 명목으로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상당성을 심히 결여한 과대한 재산분할 등에 해당하여 이 역시 사해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1/2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위 1/2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제2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 당시 자신은 C의 채권채무관계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완수

[별지목록]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강원도 동해시 동[도로명주소] 강원도 동해시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박공지붕 13층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조 및 면적 : 철근콘크리트조 84.901㎡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강원도 동해시 대 14215.4㎡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14215.4분의 52.1548

- 이 상 -

